

영국 보험계약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그 시사점

I. 들어가며

2008년 상법 보험편에 대한 개정이¹⁾ 시도된 바가 있다. 그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²⁾ 유력한 논거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인이 위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위험분산이라는 중요한 기능은 재보험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지며,³⁾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보험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은 비단 해상보험뿐 아니라 보험 전 분야에 걸친 기본법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법률은 1세기에 걸쳐 개정된 바가 없었으나, 최근 그 개정논의가 활발하며 폭넓은 의견수렴 등의

개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영국은 보험법 분야에서 많은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상법 보험편의 해석이나 개정작업에서도 주요한 좌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국보험계약법의 개정과정과 이유, 개정대상이 되는 논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해는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과 독일 등의 개정 논점들도 상당히 유사하여, 그 작업들도 참조할 점이 많을 것이다.

II. 개정 논의의 진행

영국의 법률위원회가 고지의무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미 50년 전인 1957년의 일이다.⁴⁾ 이후 다시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1) 의안번호 550, 제출일자: 2008.8.6. 제출자: 정부, 2009.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 참고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안(보험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국회, 2009).

3)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29면

4)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 2007, p. 6. 이하 “「A Joint Consultation Paper」”라 한다.

한 것이 1980년으로, 그 보고서는 고지의무, 워런티위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⁵⁾ 그 후 1997년 National Consumer Council이 발간한 보고서도 고지의무 등에 대한 시급한 개정을 역설하였고,⁶⁾ 2002년 보험회사, 중개인과 전문가 등에 의한 자율협회인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⁷⁾도 보험계약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⁸⁾ 그런데도 개정이 지연된 이유가 영국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이하 'ABI'라 한다)를 비롯한 보험업계가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하 '1906년법'이라 한다)을 옹호한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은 이미 현대의 보험시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자율규제 또는 옴부즈만의 재량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⁹⁾ 하지만 위원회는 그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상당부분 성과를 보고 있다.¹⁰⁾

최근의 과정을 보면 2006년 1월 “Scoping Pa-

per”를 발간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구하였고, 그 광범한 의견 수렴의 결과물을 Joint Paper의 형태로 발간하였다.¹¹⁾ 이후 위원회는 중요 쟁점별로 초안의 성격을 지니는 보고서를 차례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9월 고지의무(Issues Paper 1), 2006년 11월 워런티(Issues Paper 2), 2007년 3월 보험보조자와 계약체결이전의 정보(Issues Paper 3), 그리고 2007년 7월 위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첫 번째의 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하였다.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다시 토의하고¹²⁾ 그 토의 결과에 바탕하여 일부 수정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불고지와 부실고지, 워런티, 보험보조자와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에 관한 초안도 아울러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재차 2008년 1월까지 구하였으며,¹³⁾ 그 결과물이 2008년 5월 발간되었다. 한편 추가적 쟁점인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고서(Issue Paper 4)가 2008년 1월, 소규모기업(micro-business)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고서(Issue

5) Law, Commission, 「Insurance Law,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1980, Law Com No 104.

6) Baris Soyer,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still alive?, [2003]LMCLQ, 385, p. 391.

7)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 「Insurance Law Reform: the consumer case for review of insurance law」 (1997) <http://www.bila.org.uk/>

8) Baris Soyer, Ibid, p. 391.

9) 「A Joint Consultation Paper」, p. 7.

10) http://www.lawcom.gov.uk/insurance_contract.htm에서 각종 자료를 구할 수 있고, 그 개정과정에 대하여도 상세히 알 수 있다.

11) 「A Joint Consultation Paper」, p. 6. 그 의견질의는 단체나 전문가 등 118곳에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국보험자협회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400개가 넘는 회사이었으나, 그 답에 특별한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12) 이러한 세미나에 대한 자료도 위의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A Joint Consultation Paper」, p. 1.

13) 그 과정에서 다시 총 105개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였다

paper 5)가 2009년 4월에 각각 발간되었다. 이후 2010년 3월에 보험금지급지체시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한 보고서(Issue Paper 6)가, 그해 7월에는 주로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보험계약체결 후의 피보험자의 선의의무에 관한 보고서(Issue Paper 7)와 보험료에 대한 보험중개인의 책임에 관한 보고서(Issue Paper 8)가 발간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해상보험약관의 요건에 관한 보고서(Issue Paper 9)가 출간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지체, 사기적 보험금청구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논점들을 묶어 두 번째 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기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Consultation Paper를 출간하였다.

Ⅲ. 주요 개정 내용

1. 서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보험계약법의 개정 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논점과 관련하여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상법의 개정논의와 더불어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연구 및 논의가 집중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지의무, 피보험이익 그리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영국 보험계약법의 개정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지의무

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개정은 주로 가계보험(consumer insurance)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로서 다루어져 왔고, 최근 통과된 법률안도 가계보험에 관한 내용이다.¹⁴⁾ 이하에서는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변화된 고지의무 제도를 소개한다. 우선 현재의 이러한 변화된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별에 관한 내용부터 검토한다.

1) 가계보험의 개념

개정안이 완성되기 전 발간된 가계보험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Consultation Paper¹⁵⁾에서 법률위원회는 가계보험은 오로지 혹은 주로 자신

14) 기업보험(Business Insurance)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Consultation Paper가 출간되어 있다. http://lawcommission.justice.gov.uk/docs/cp204_ICL_business-disclosure.pdf

15) Insurance Contract Law: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2007)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182; Scottish Law Commission Discussion Paper No 134.

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그 범위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그 목적이 혼재된 보험계약의 경우 - 즉, 사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도 그것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⁶⁾ 그러나 2008년에 소개된, Financial Service Authority(FSA) 원칙에 따를 경우, 가계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업무나 직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으로 정의된다.¹⁷⁾ 또한 만약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consumer)이기도 하고 상업적인 고객(customer)이기도 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는 상업적인 고객으로 본다.¹⁸⁾

법률위원회는 FSA의 원칙과 유사한 내용을 법률안의 내용으로 하였다. 즉, “개인(Individual)”이라는 개념은 “자연인(natural person)”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또는 기타 법인보다는 자연인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개정안과 FSA의 내용은 모두 보험계약체결시의 보험계약자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Consultation Paper에서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가계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FSA의 정의는 EU directive on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nd the Brussels Convention를 따르고 있고, 여기서는 “업무나 직업(trade and profession)”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최초로 법률위원회는 “사업(business)”, “업무(trade)” 그리고 “직업(profession)”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업무”나 “직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피고용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19),20)} 최종적으로 법률위원회는 EU consumer law directives and the Brussels Convention과 법률안의 불필요한 차이점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안에서는 “업무, 사업 또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피고용자도 포함된다. 결국 법률안에서는 개인의 업무, 사업 또는 직업

16) 따라서, 주로 영업용 택시로서 차량을 이용하고, 때때로 개인의 여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30,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집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집에 3,000파운드 정도의 사업용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가계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17) ICOBS Rule 2.1.1(3). We do not think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ural person”. They are both intended to exclude companies and corporations.

18) ICOBS Guidance 2.1.3.

19) Consumer Insurance Law: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The Law Commission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 2009, p. 49

20) Prostar Management Ltd v Twaddle, 2003 SLT (Sh Ct) 11. 이 사건에서 프로 풋볼선수가 한 회사를 자신의 계약협상 등을 위하여 고용하였는데, 이 풋볼선수는 그가 풋볼클럽의 피고용인이고, 따라서 직업이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풋볼선수는 프로 풋볼선수로서 직업이나 업무에 관련된 것이고, 그가 주장한 “업무”와 “직업”이 갖는 협의의 또는 특별한 의미로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과 완전히 관련이 없거나 주로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개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가계보험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²¹⁾

2) 자발적인 고지 의무의 폐지

법률위원회는 Consultation Paper에서 고지의무에 관하여,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는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²²⁾ 또한 보험자가 일반적인 질문(general question)을 하는 경우, 만약 합리적인 사람이 그 질문은 문제가 되는 특정한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그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개정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즉, 자발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폐지하고, 보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소극적인 의무로 고지의무를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도 보험계약의 청약자는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만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²³⁾, 보험자는 일반적

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법원과 ombudsman은 답변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당해 질문의 명확성과 특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²⁴⁾ 이처럼 자발적인 고지의무를 소극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소비자(consumer)는 보험자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주의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²⁵⁾ 이것이 자발적인 고지의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항이다. 자발적인 고지 대신에, 보험자의 질문에 대한 정직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로 정확하고 완전한 답변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직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 17조의 적용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알릴 의무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²⁶⁾

정리하면,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안의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보험자

21) draft Bill, cl 1. “정의”

이 법률에서 “가계보험계약”은 개인의 업무, 사업 또는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주로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개인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하고,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가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체결하기 위하여 청약한 자를 의미하며, “보험자”는 가계보험계약의 타방 당사자이거나 그렇게 될 자를 의미한다.

22)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 p. 80.

23) Draft Bill Cl 2) “A failure by the consumer to comply with the insurer’s request to confirm or amend particulars previously given is capable of being a misrepresent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4) Draft Bill Cl 3(2)(C).

25) Draft Cl 2(2). “It is the duty of the consumer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resentation to the insurer”

26)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149.

가 질문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는 보험청약자가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²⁷⁾ 보험자는 일반적인 질문을 할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응답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법원과 움브즈만은 질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참작할 수 있다.²⁸⁾

3) 부실고지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의 신설

(1) 부실고지의 개념

Consultation Paper에서는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의 개념에 대해서 부실고지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갖지 못한다고 제안하였다.²⁹⁾ 개정안에도 이러한 취지의 조항이 포

함되어 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자는 소비자의 부실고지가 존재하는 경우 구제수단(remedy)을 갖는다고 하면서, 다만 그러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러한 부실고지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³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를 이유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이다. 현재의 법률이 중요한(material) 사실의 불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중요한’이 의미하는것은 신중한(prudent)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³¹⁾ 그러나 개정안은 그러한 요건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의적(deliberate)이거나 중과실(reckless)³²⁾에 의한 부실고지에 관해서 법률위원회는

27) draft Bill, cl 2(1)-(4). 계약체결 전 고지 의무

(1) 이 조항은 가계보험 체결 전 혹은 갱신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2) 그 의무는 보험소비자(consumer)가 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주어진 특정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라는 보험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실고지에 해당한다.

(4) (2)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같은 상황에서 존재하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지 않을 의무를 대체한다.

28) Draft Bill, cl 3(2)(c)

29)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 p. 83.

30) Draft Cl 4 (1) “An insurer has a remedy against a consumer for a misrepresentation made by the consumer before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varied only if— (a) the consumer made the misrepresentation in breach of the duty set out in section 2(2), and (b) the insurer shows that without the misrepresentation, that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r agreed to the variation) at all, or would have done so only on different terms.

31) Marine Insurance Act 1906, s. 20(2).

32) 법률위원회는 “deliberate” 혹은 “reckless”와 “careless”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구제수단도 달라지는데, reckless가 ‘전혀 주의를 없는(without any care)’이라고 하고, careless는 deliberate 혹은 reckless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reckless를 우리법의 중과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areless를 우리법의 경과실로 번역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는 계약체결 전의 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실고지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① 그러한 부실고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데 부주의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그러나 부실고지가 보험자에게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부주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법률위원회는 고의적인(deliberate) 것과 중과실(reckless)에 대하여도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고의적인(deliberate) 것은 고지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고지한 경우를 의미하고,³³⁾ 부주의한 경우는 "아무런 주의가 없는(without any care)" 것이라고 설명했다.³⁴⁾ 이러한 내용은 법률안에 반영되었다.³⁵⁾ 이러한 개념 정의는 보통법상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³⁶⁾ 또한 보험자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보험

계약자가 그 내용이 보험자가 알기 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부실고지의 시기

현재의 영국법에 따를 때, 고지의무와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는 오직 보험계약을 체결³⁷⁾하거나 갱신할 때에 발생한다. 법률위원회는 현행 법률의 이러한 측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러한 의무들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률안은 제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원할 때, 그 갱신과 관련된 정보 자체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즉, 원래의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³⁸⁾ 갱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음브즈만 사례에

33)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69.

34) Ibid.

35) Draft Cl 5(2) A qualifying misre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if the consumer

(a) knew that it was untrue or misleading, or did not care whether or not it was untrue or misleading, and

(b) knew that the matter to which the misrepresentation related was relevant to the insurer, or did not care whether or not it was relevant to the insurer.

36) Derry v. Peek(1889) LR 14 App Cas 337.

37) 그러나 현재의 법률과 개정안의 용어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즉, MIA 18조에서 20조에서는 "conclud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법률안에서는 "entered into"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concluded"는 계약내용의 협상이 완결되고 계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법률위원회는 "concluded"보다는 "entered into"가 더 분명한 표현이라고 보았고, 결국 의미는 같다고 한다.

38) Lishman v Northern Maritime (1875) LR 10 CP 179.

서도 발생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원회는 갱신과 관련된 고지의무의 내용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갱신과 관련된 고지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1906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또한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약의 없이 실수로 부실고지를 한 뒤,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당시에 그것이 사실이었으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실이 아닌 사항이 되었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고지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³⁹⁾ 누군가가 선의로 어떠한 사항을 진술하였고 후에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된다.⁴⁰⁾ 그러나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한 고지의무는 종료되는 것이다.⁴¹⁾ 즉, 변화된 상황을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⁴²⁾ 만약 보험자가 변화된 상황에 대하여 고지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Consultation Paper에서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현행 법률의 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청약서에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보험소비자는 그러한 진술을 정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정보를 제공한 어떠한 요구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⁴³⁾

39)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59.

40) Ibid.

41) Ibid.

42) Ibid.

43)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고,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질병보험 등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약관상 명백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은 이 개정안의 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대부분의 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변경을 권고할 실익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들고 있다.

결국 법률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기 전에만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고 제안하였다.

(3) 합리적 주의의무

Consultation Paper에서 법률위원회는 만약 소비자가 부실고지를 하는 때에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면, 보험자는 그러한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⁴⁾

개정안에서도 법률위원회는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그것이 부실고지가 되더라도 보험자는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갖지 못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nsultation Paper에서, 합리적인 진술이었으나 사실이 아니거나 불충분한 진술인 경우에,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법률위원회는 합리적이었으나 부실고지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① 질문이 일반적이었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보험자가 특정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요청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⁴⁵⁾

- ② 보험소비자가 자신이 진술한 사항이 진실한 것이라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⁴⁶⁾
- ③ 합리적인 보험소비자가 보험자가 알기를 원하는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⁴⁷⁾
- ④ 보험소비자가 보험자는 그러한 정보 그 자체를 얻기를 원했다고 인식한 것이 합리적인 경우⁴⁸⁾
- ⑤ 특히,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를 알린 경우에, 보험소비자는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한 것이 합리적인 경우⁴⁹⁾

법률위원회는 보험소비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술을 하게 될 여러 가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⁵⁰⁾ 그러한 목록의 작성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기 때문인데, 대신에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주의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 즉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보험소비자가 정직하였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

44) A Joint Consultation Paper, para 12.12(1).

45) Ibid, para 4.32.

46) Ibid, para 4.120.

47) Ibid, para 4.121.

48) Ibid, para 4.143.

49) Ibid, para 4.144.

50)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62.

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러한 부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② 합리적인 주의의 기준은 합리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⁵¹⁾ ③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소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관련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⁵²⁾ ④ 개정안은 그러한 관련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보험의 유형, 보험자의 설명 내용, 대리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질문의 명확성 등이 그것이다.⁵³⁾ ⑤ 개정안은 정직하지 않은 부실고지는 항상 합리적 주의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⁵⁴⁾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부실고지의 효과

개정안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

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은 부실고지가 고의적(deliberate) 또는 중과실(reckless)에 의한 것인 경우와 경과실(careless)인 경우에 따라 구분된다. 즉, 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고지의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⁵⁵⁾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consumer)에게 불공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부실고지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자의 구제수단이 달라진다. 즉, 보험자가 그러한 위협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이고, 만약 보험자가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었다면(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 그 다른 내용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보험자가 특정한 형태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였다면, 보험자는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⁵⁷⁾ 또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증액하려고 했다면, 그러한 보험금 청구는 증액할 보험료와의 차액에 따른 비율로 감소된다.⁵⁸⁾

51) Draft Bill, cl 3(3) and (4).

52) Draft Bill, cl 3(1).

53) Draft Bill, cl 3(2).

54) Draft Bill, cl 3(5).

55) Draft cl 2(2)(a).

56)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71.

57)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경과실로 자신의 청력상실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자는 그러한 유형의 보험금청구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보험자는 청력상실과 관련된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유형의 보험금청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다. 유사하게, 보험자가 워런티(warranty)를 정하려고 하였다면, 그 청구는 마치 그 보험계약에 그러한 워런티조항이 있는 것처럼 다루어진다.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171.

58) 예컨대, 만약 보험자가 1,000파운드의 보험료를 1,500파운드로 증액하려고 했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2/3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부실고지의 유형에 따른 법률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실고지가 정직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면, 보험자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갖지 않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부실고지가 경과실(careless)에 의한 것이었다면, 보험자는 보충적인 구제수단(compensatory remedy)을 갖는다. 즉 부실고지되지 않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고지되었을 경우 보험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즉, 체결된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적용되던가 증액할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 ③ 부실고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것처럼 다루고 모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

(2) 중요성의 판단

현재의 영국법률은 부실고지는 그 사항이 중대하였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부실고지한 사항이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⁵⁹⁾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자가 부실고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이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소비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보험자는 부실고지가 그 보험시장의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⁶⁰⁾

정리하면 법률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가 부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실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⁶¹⁾ 또한 보험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동일한 시장에서 다른 신중한 보험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3) 보험료 반환의 문제

법률위원회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률위원회는 그러한 원칙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가혹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의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59) Marine Insurance Act 1906, s 20(2).

60) Consultation Paper, para 12.15.

61) Draft Bill, cl 4(1)(b).

에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동보험(Joint Insurance)인 경우에도, 한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부실고지를 하였고 다른 보험계약자들은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이때에도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²⁾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불공정한 경우 법원 혹은 ombudsman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소비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할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⁶³⁾

(4) 추가적 권리의 불인정

Consultation Paper에서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법률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보험계약에 추가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법률위원회는 조건에 따라 보험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계보험에 있어서 부실고지나 불고지를 규율하는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⁶⁴⁾

그러므로 법률위원회는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제10조 제1항⁶⁵⁾은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보험소비자의 위치를 불리하도록 하는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계약체결의 효력이나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불고지와 부실고지를 다루는 내용에 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보험소비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알릴 계약의 내용에는 그 적용이 없다. 그러한 내용은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고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3. 피보험이익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하여 2008년에 Issue Paper 4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2011년 12월에 피보험이익, 보험금지급의무, 사기적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Joint Consultation Paper를 출간하였다.

상법상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핵심적인 개

62) UK Law Commission, Report and Draft Bill, p. 73.

63) Draft Bill, Sch 1, para 2.

64) Consultation Paper, para 12.24.

65) "Contracting out" (1) A term of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consumer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the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3) than the consumer would be i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념이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액으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고, 도박적인 보험과 초과보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위험의 초래를 방지할 수 있다.⁶⁶⁾

즉,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최대선의성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영국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소 놀라운 것이다. 즉, 영국에서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사라지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법상 피보험이익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상법 제668조, 제669조)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보통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만 고려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⁶⁷⁾

주지하다시피 영미는 인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피보험이익을 유효한 보험계약의 요건으로 하

고 있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의 논의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인보험의 피보험이익을 부정하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정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상법에서 피보험이익이 갖는 위치와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법 중 보험편의 개정안에는 실손 보상적 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⁶⁸⁾ 종래의 중복보험의 법리는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이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보험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도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Issue Paper 및 Consultation Paper에서의 개정논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⁶⁹⁾

66) 손해액을 넘는 보험금의 수령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도박의 수단으로 보험을 이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도박화의 방지를 위한 공익의 요청이 피보험이익과 손해보상원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Robert E. Keeton/Alan I. Widiss,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s, West Publishing, 1988, p.136.

67) 양승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의 법리(2002), 삼지원, 234면.

68) 개정안 제739조(상해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①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 및 제732조의2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손(實損) 보상적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9)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법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진수, “보험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 개정논의의 시사점”, 「보험학회지」(2012. 4), 한국보험학회, 132면 이하 참조.

1) 인보험

법률위원회는 Life Assurance Act 1774를 대체할 새로운 피보험이익의 제정법상의 요건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이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다.⁷⁰⁾

(1) 기준의 완화: 경제적 독립성

법률위원회 제안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독립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률은 법률적인 의무가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사실적인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만약 청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에 경제적인 이익을 갖게 될 실제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사망시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⁷¹⁾ 이것으로 사람들은 가족들과 독립되어 있고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가족의 생명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보험금액이 발생가능한 손해에 제한되어야 하는가이다. 그러한 평가는 필연적인 문제이지만, 피보험이익의 법리에 따르면 그것은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보험금액이 청약자가 입게 될 손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18세 이하의 자녀

법률위원회의 Issue Paper 4에 대하여 의견의 응답자들은, 부모들은 18세 이하의 자녀의 생명에 대하여 적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30,000 파운드가 그 최대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험상품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부모들이 18세 이하의 자녀들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권한을 갖는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 보험금액의 최대한은 얼마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⁷²⁾

(3) 동거인

앞서 제안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기준은 대부분의 동거인들⁷³⁾이 각각의 다른 동거인들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70)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 para 13.111 to 13.116.

71) Ibid., p.148.

72)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 para 13.77 to 13.86.

73) 혼인관계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밀접한 관계로서 서로 생활하는 커플을 의미하는 것이다. Ibid., p.150.

그러나 장기간의 동거인들이 경제적인 손해의 입증 없이 서로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거인에 대하여 적당한 정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 이것은 그 청약절차를 더욱 쉽게 만들게 될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동거인들은 만약 그들이 남편이나 부인으로서 혹은 Civil partner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5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가정에서 생활한 것이라면, 경제적 손해의 입증 없이 각각의 상대방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⁷⁴⁾

(4) 단체조직

연금의 수탁자들이 그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⁷⁵⁾ 법률위원회는 연금이나 단체조직의 수탁자들이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제한 없는 피보험이익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⁷⁶⁾ 또한 법률위원회는 피용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단체조직에 있어서 고용인들 역시 피보험자가 되는 피용인들의 생명에 대하여 제한 없는 피보험이익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⁷⁷⁾

(5) Life Assurance Act 1774의 제2조의 폐지

법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안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의 이름을 보험계약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이며, Life Assurance Act 1774의 제2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⁷⁸⁾

2) 손해보험

손해보험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보다 명확한 형태로 재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법률위원회는 현재에 피보험이익의 법리는 보통법과 제정법의 혼란스러운 배열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⁷⁹⁾

- ①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제정법상의 근거를 규정할 것
- ② 진부한 제정법을 폐지할 것: the Marine In-

74) Ibid., para 13.77 to 13.87 to 13.103.

75) Ibid., p.155

76) Ibid.

77) Ibid.

78)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 para 13.77 to 13.108 to 13.110.

79) Ibid., pp.131-134.

insurance Act 1788 and the Marine Insurance (Gambling Policies) Act 1909

- ③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
- ④ 당사자가 특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피보험이익의 형태를 취득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규정할 것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정의를 위하여, 법률위원회는 두 가지 선택에 따라 의견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피보험이익의 정의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판례법에 기초하여 포괄적이지 않은 목록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Marine Insurance Act 1906(sections 4-15)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잘 운영될 경우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⁸⁰⁾

4. 사기적 보험금 청구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여 그 대처 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보험약관상의 사

기적 보험금청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상법 중 보험편의 개정시도가 있었고, 이에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보험계약은 선의성⁸¹⁾에 기초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선의성은 보험계약의 일방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 전반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일 것이다.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2010년 7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체결 후의 선의의무에 관한 일곱 번째 Issue Paper를 출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Joint Consultation Paper를 출간하였다. 이는 특히 계약체결 후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하여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이전의 상법 중 보험편의 개정논의 및 보험사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상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제안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 제안은 사기의 개념에 대하여는 보통법에 남겨 둔 채 오직 민사적인 보험자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적인 제재 역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논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금의 사기적 청구의 횡행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민사법 영역에 있어서 명확한 제재

80) Ibid., p.134.

81) 많은 경우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최대 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들지만,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 후의 당사자의 선의의무에 관하여는 “최대(Utmost)”라는 표현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단지 “선의성(Good faith)”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후의 보험계약의 특성은 “선의성” 그리고 선의성과 관련된 의무를 “선의의무”라고 번역하였다.

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원칙이 복잡할수록, 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1) 제정법적인 규제

법률위원회는 제정법으로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 (1) 사기를 행하는 보험계약자는 사기와 관련된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박탈당한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법의 태도이고,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사기적 청구를 한 보험계약자는 그 사기 후에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박탈당한다. 이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재 시장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법률은 명확하지 않다.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 (3)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그러한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의 유효한 보험금 지급청구에는 그것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MIA 제17조는 보

험자로 하여금 이전의 보험금지급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MIA 제17조는 원칙적이지 않은 것이고 비현실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법률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4) 또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를 조사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것이 박탈된 청구권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지급심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그러한 권리가 자주 사용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은 모든 청구가 위조된 경우에 중대한 사기에 대하여 중요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⁸²⁾

2)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확장시키는 명시적 용어의 사용

많은 보험계약은 명시적인 사기 조항(fraud clauses)을 사용하여 사기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조건부로 당사계약에 있어서 명시적인 사기조항이 타당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용어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82)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 para 8.5 to 8.23.

가계보험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더 큰 권리를 주는 어떠한 내용도 효력이 없음을 제안하였다.⁸³⁾

3)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생명보험, 기타 장기간의 이익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의 구성원들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그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체보험의 구성원이 손해를 과장할 경우, 그들은 청구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단체보험의 구성원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갖는 구제수단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을 제안하였다.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체보험의 구성원은 모든 청구권이 박탈되며, 그 이후의 보험금청구권도 박탈된다.

또한 사기에 대한 보험자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구성원의 사기는 다른 구성원의 보험금청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⁸⁴⁾

4) 공동보험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법률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에 의한 사기는 결과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청구권도 박탈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이러한 것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이 부부의 집에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그 모든 청구권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ssue paper 7에서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 중 1인에 의한 사기는 기타 다른 피보험자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재의 법리인데,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결백한 피보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결백한 당사자가 그러한 사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그러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⁵⁾ 이러한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

83)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 para 8.24 to 8.30.

84) Ibid., para 9.23 to 9.30.

85) Ibid.

였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조건적으로 그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법률위원회는 공동보험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고, 입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복잡한 입증의 문제나 평가를 필요로 하게 되며,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둔감한 방식으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법률위원회는 법원이 합동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을 해석함으로써,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시사점

1. 고지의무

1) 가계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가 존재하는 취지와 근거를,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는다면, 비교적 정보의 비대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개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법률효과일 수 있다(상법 제651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특히 가계보험의

경우 자발적인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수동적인 의무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고지의무의 형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혹할 수 있는 고지의무의 요건과 효과를 피해할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국의 개정법률안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직업, 업무 또는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회사 등의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요건과 더불어 가입자가 상인인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수동적 의무로의 전환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물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고지의무에 있어서 중요성의 판단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떠한 것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지 판단하는 것은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계약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주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보험에 전문성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알릴 의무를 수동적인 것으로 법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동적인 의무로 전환하더라도, 부실고

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해지가 소급적 효력을 갖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 등에 가혹한 것이므로, 그 효과를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3)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의 정도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계약 체결 전 자발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폐지하면서,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 그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답변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은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었던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상법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인 요건으로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의 고의라 함

은 해의뿐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⁸⁶⁾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이 되는 고의는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실이 부실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⁸⁷⁾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 등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고지에 있어서의 고의라고 보고 있다. 즉, 고지의무 위반에서의 고의는 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고 기타 법영역에서의 고의와는 다르게 해석된다.⁸⁸⁾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학설에 대립이 있고, 중요성에 관한 고지의무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관하여는 과실을 논하고 있지 아니하다. 고지의무자가 단순히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도 상법 제651조의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고지의무자가 알 수 있었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범위는 그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주의의무

86) 양승규, 앞의 책, 121면.

87) 이상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151면; 장덕조,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해석", 『보험법연구 3』, 삼지원, 1999, 155-162면.

88) 양승규, 앞의 책, 121면에서는 "고의라 함은 해칠 의사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의라 함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령 피보험자가 지난날의 병력을 밝히고 싶지 아니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223면에서도 "고의는 고지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항이 부실임을 알고 있음을 가리키며, 반드시 사기 등과 같은 적극적 기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 정도에 기준하여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험 등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기준하에 제한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⁸⁹⁾

살피건대, 영국 법률위원회의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고지의무의 주관적인 요건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실고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부실고지를 한 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의 반환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부실고지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 보험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하거나 증액되었을 보험료를 차감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부실고지를 하였으나, 의무자가 정직하였고 합리적인 의무를 다하였다면, 보험자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갖지 못한다.

상법은 제651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라는 한

가지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개정안과 비교하면 경과실인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국의 개정안이 주는 시사점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법률효과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된 내용의 보험약관을 적용하거나 차감된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서,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해지됨으로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피보험이익

상법의 경우 인보험에 있어서는, 영국과 달리 피보험이익을 유효한 보험계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보험에 있어서의 영국의 개정논의를 검토한 결과, 영국은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피보험이익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완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것

89) 장덕조,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체계적 해석”, 『보험법연구』(1998) 제2권, 보험법연구회, 156면.

자체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영국에서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이 침해되는 것 때문에, 그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영국에서는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확대로 보험의 유용성을 확보를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에 대하여는 2005년 도박법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폐지된 상황이지만, 손실보상의 원리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도박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막는 기능은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즉, 복잡하고 난해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어도, 도박화의 방지와 도덕적 위험을 막는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최소한의 기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 피보험이익의 범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위원회는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집중하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난해한 부분이 많다. 부부별산제 제도하에서 남편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의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⁹⁰⁾도 이러한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08년 상법 중 보험편의 개정안에서 실손 보상적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의 범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인보험에서도 영미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범리를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상해보험가입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기적 보험금청구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그 효과로서 청구권이 박탈된다고 제안하면서, MIA 제17조와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기적 청구가 선의의무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 소급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MIA 제17조에 따를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지급된 사기와 관련없는 보험금도 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적인 해결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

9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이다.

우리의 경우 MIA 제17조와 같이 보험계약이 선의성에 반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시부터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를 때, 당사자가 그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 보험약관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지하나 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 우리의 법리는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판례에 맡겨 두자고 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행위의 해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의 판례도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형법에서의 사기에 준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청구권의 박탈을 타당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으로 들고 있는데, 보험금청구 전부가 사기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제재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부에 사기적인 요소가 추가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민사적인 제재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의 경우에도 청구권의 박탈을 그 효과로 하고 있지만, 약관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항을

비교·교량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는 사기적 보험금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보험자의 선의의무에 관한 정치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전에 앞서 선의성의 상호성과 보험자의 선의의무에 관한 치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어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다년간의 논의를 거쳐 점차적인 개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그 과정이 실로 정치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대대적인 개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숙성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반대의견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유사한 시기에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들의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 중 보험산업의 중심지인 영국의 개정과정은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계약체결 전에 부담하는 자발적인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를 실무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수동적인 의무로 전환하고 의무위반시 그 주의의무의 정도에 따라 비율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나,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요건과 그 효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인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교법적인 고찰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영국에서의 개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 내는 일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진 수

(수원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안(보험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국회, 2009).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양승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보험법의 법리(2002), 삼지원.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 이상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1.
- 장덕조,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해석”, 『보험법연구 3』, 삼지원, 1999.
- 장덕조, “다수의 상해보험계약과 고지의무”, 『보험법연구 4』(2002), 보험법연구회.
- 장덕조, “사기적 보험금청구”, 『인권과 정의』(2008. 6) 제386호, 대한변호사회.
- 장덕조,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동향과 최대선의”, 『보험학회지』(2009. 4), 한국보험학회.
-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 Baris Soyer,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still alive?, [2003]LMCLQ, 385.
- British Insurance Law Association, 「Insurance Law Reform: the consumer case for review of insurance law」(1997).
- UK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2009.
- Robert E. Keeton/Alan I. Widiss,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s, West Publishing, 1988.
- UK Law Commission, Issues Paper 4(Insurable Interest), 2008.
-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2007.
- UK Law Commission, 「Insurance Law,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1980, Law Com No 104.
- UK Law Commission, 「A Joint Consultation Paper(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2011.